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9 December 2016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OECD: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statistics for 2015

BEPS의 Action 14(조세분쟁 해결의 효율화)에 따라 OECD와 G20 국가들은 조세조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MAP(상호합의절차) 통계자료의 발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AP 사례에 대한 연간 통계자료는 해당 자료의 수집에 동의한 모든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OECD는 2016년 12월 6일에 MAP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미국, 중국, 독일 등 일부 주요 국가들의 통계자료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MAP 신청 건수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호주	9	13	8	19	21	10	10	8	10	14
체코	5	10	5	6	8	12	13	7	12	11
독일	212	186	177	177	150	306	277	267	374	363
일본	37	49	40	44	34	22	31	36	45	38
한국	8	9	13	25	13	24	22	23	33	42
미국	240	257	308	326	252	279	236	403	354	289
중국*	n/a	n/a	n/a	n/a	n/a	n/a	n/a	23	29	25

(*)중국의 경우 2013년도부터 MAP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진행중인 MAP 건수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호주	16	23	22	23	27	21	21	23	18	22
체코	13	13	4	8	13	14	16	21	26	33
독일	476	527	519	543	484	702	787	858	1029	1147
일본	67	85	82	90	75	61	70	65	77	95
한국	28	30	30	47	44	59	65	80	98	139
미국	430	500	578	724	705	686	573	732	956	998
중국*	n/a	n/a	n/a	n/a	n/a	n/a	n/a	43	55	99

(*)중국의 경우 2013년도부터 MAP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OECD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료 수집 대상 연도인 2006년부터 2015년 동안 OECD 회원국들의 진행중인 MAP 건수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도에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에 동의한 국가들의 MAP가 완결, 종결 혹은 철회되기까지의 주기는 2014년도에 평균 23.79개월에서 2015년도에 평균 20.47개월로 감소하였습니다. OECD 회원국의 진행중인 MAP 건수를 분석해보면, 타 OECD 회원국과의 MAP 비중이 약 90%이며 비회원국과의 MAP는 약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Back to top

OECD: BEPS guidance on country-by-country reporting, country-specific information on implementation

OECD 는 2016 년 12 월 6 일에 BEPS Action 13 에 따른 국가별 보고서의 국제적 도입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다음의 새로운 문서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국가별 보고서 제출 관할권의 법률 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
- 국가별 보고서 기준에 대한 추가적 해석 지침

위의 문서들은 세무 행정국과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별 보고서의 도입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가별 보고서 제출 관할권의 법률 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에는 법률 현황, 최초 보고 기간, 대리 신고 및 자발 신고 가능 여부,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요구 여부 등이 포함되며 법률 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2017 년 1 월에 과세당국 간의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활성화 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의 협정(Qualifying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s, “QCAA”)이 체결되면 해당 문서화 규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국가별 보고서 기준에 대한 추가적 해석 지침은 다국적 기업 내에서 보고 주체 법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과세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재 국가별 보고서 관련 기준이 도입 시기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과세당국에 제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구비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 과세당국 통보 기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OECD 는 이번에 발표된 추가 문서화 지침이 국가별 보고서의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국제적 도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ack to top

Czech Republic: High court disallows loss for “toll manufacturer”

체코 고등법원은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한 손실을 기록한 “무상 사급업자(Toll Manufacturer) 혹은 유상 사급업자(Contract Manufacturer)”에 대한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이전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는 모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이를 사용하여 단순 케이블 제조 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입니다. 납세자와 모회사 간의 이전가격은 납세자가 제공하는 제조 용역의 분당 가격으로 설정되었으며 반기마다 갱신되었습니다. 납세자는 2008 년에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자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발생된 원가의 총 비율에 따른 추가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손실 발생은 생산량 감소로 인한 것이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납세자는 단순 제조 기능만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설비 가동률을 관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제출한 이전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는 제조와 관련된 위험을 제외한 다른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코 고등법원은 납세자가 제공한 용역 원가를 고려하여 적용한 원가가산방법은 적절하지 않고 전체 발생된 원가에 보상을 받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을 승인하였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